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24스525(본심판)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본심판), (인천)2022브10043
(반심판)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청구외인, 청구사유를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 청구외인으로,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청구외인이 2014. 9. 1. 사망하자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은 2016. 4. 15.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78,214,4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

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2)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망 청구외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청구외인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며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